

퇴직연금 정기예금 요약상품설명서

기본정보

|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 | | | | | | | | | | | | | |
|---|---|---|----------|------------|---------|------------|-------|-------------------------------|-------|-------------------------------|--------|-------------------------------|--------|-------------------------------|---|
| 가입금액 | 1원 이상 | | | | | | | | | | | | | | |
| 계약기간 | 3개월, 6개월, 1년, 18개월, 2년, 30개월, 3년, 5년(디폴트옵션형은 3년) | | | | | |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 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지급 | | | | | | | | | | | | | | |
| 지급제한 | 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 | | | | | | | | | | | | | |
|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금리 적용 등 | | | | | | | | | | | | | | |
| 적용금리 |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 적용 | | | | | | | | | | | | | | |
| 만기처리방법 | (DB)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 (DC/IRP)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재예치 됨 | | | | | | | | | | | | | | |
| 분할해지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 해지 가능 | | | | | | | | | | | | | | |
| 제한사항 | 통장발급, 담보제공, 질권설정 및 양수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 | | | | | | | | | | | | |
| 예금자 보호 | DC/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 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 | | | | | | | | | | | |
| | DB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 | | | | | | | |
| 중도해지 이자율 (연%, 세전) | DB · DC · IRP | <table border="1"> <thead> <tr> <th>경과기간</th> <th>적용금리/적용률</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미만</td> <td>0.10%</td> </tr> <tr> <td>6개월미만</td> <td>중도해지 기준금리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 </tr> <tr> <td>9개월미만</td> <td>중도해지 기준금리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 </tr> <tr> <td>11개월미만</td> <td>중도해지 기준금리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 </tr> <tr> <td>11개월이상</td> <td>중도해지 기준금리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 </tr> </tbody> </table> | 경과기간 | 적용금리/적용률 | 3개월미만 | 0.10% | 6개월미만 | 중도해지 기준금리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9개월미만 | 중도해지 기준금리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11개월미만 | 중도해지 기준금리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11개월이상 | 중도해지 기준금리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 기준금리 :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기본이자율 ※ 농협인터넷뱅킹>금융상품몰>농협은행>공시실>예금>예금금리>거치식>정기예금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
| | | 경과기간 | 적용금리/적용률 | | | | | | | | | | | | |
| 3개월미만 | 0.10% | | | | | | | | | | | | | | |
| 6개월미만 | 중도해지 기준금리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 | | | | | | | | | | | | |
| 9개월미만 | 중도해지 기준금리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 | | | | | | | | | | | | |
| 11개월미만 | 중도해지 기준금리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 | | | | | | | | | | | | |
| 11개월이상 | 중도해지 기준금리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경과기간</th> <th>적용금리</th> </tr> </thead> <tbody> <tr> <td>32개월 미만</td> <td>약정금리 × 80%</td> </tr> <tr> <td>32개월 이상</td> <td>약정금리 × 9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금리 :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디폴트옵션형) 금리 적용 ■ 경과월수, 계약월수 미적용 ■ 시행일(25년6월)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 | 경과기간 | 적용금리 | 32개월 미만 | 약정금리 × 80% | 32개월 이상 | 약정금리 × 90% | | | | | | | | | |
| 경과기간 | 적용금리 | | | | | | | | | | | | | | |
| 32개월 미만 | 약정금리 × 80% | | | | | | | | | | | | | | |
| 32개월 이상 | 약정금리 × 90% | | | | | | | | | | | | | | |

2. 특별중도해지 금리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아래 금리 적용
 (단, 퇴직연금 수수료 지급,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 취소 등 사유인 경우에는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금리 적용)

| 경과기간 | 적용금리 ^{주)} |
|--------------|--------------------|
| 3개월 미만 | 3개월 만기 금리 |
| 3개월 ~ 6개월 미만 | 6개월 만기 금리 |
| 6개월 ~ 1년 미만 | 1년 만기 금리 |
| 1년 이상 | 경과기간별 금리 |

^{주)}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퇴직연금부)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 됩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25.07.01.)

| 구분 | 내용 | | | | | | | | |
|--|---|------|------|------|------|------|------|------|------|
|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 | | | | | | | |
| 가입금액 | 1원 이상 | 최고금액 | | | 제한없음 | | | | |
| 계약기간 | 3개월, 6개월, 1년, 18개월, 2년, 30개월, 3년, 5년 (디폴트옵션형은 3년)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 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지급 | | | | | | | | |
|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변동 불가 | | | | | | | | |
| 해지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 | | | | | | | |
| 만기앞당김해지 | 만기일이 금융휴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만기앞당김 해지 가능 ※ 단,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계산 기간에서 차감하여 약정금리를 적용 | | | | | | | | |
| 적용 이자율 (연%, 세전) |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 적용 | | | | | | | | |
| | (2025.07.01.현재 고시금리, 연%,세전) | | | | | | | | |
| | 유형 | 3개월 | 6개월 | 1년 | 18개월 | 2년 | 30개월 | 3년 | 5년 |
| | 확정급여형 | 2.05 | 2.15 | 2.50 | 2.10 | 2.03 | 2.03 | 2.00 | 2.00 |
| 확정기여형,개인형 | 1.95 | 2.05 | 2.40 | 2.00 | 1.93 | 1.93 | 1.90 | 1.90 | |
| (디폴트옵션) 확정기여형,개인형 | - | - | - | - | - | - | 2.0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이율은 작성일 현재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입일의 고시금리에 따름 | | | | | | | | | |

2 거래 조건

| | | | |
|-----------------------------------|--|--|-------------------------------|
| 중도해지 이자율 (연%,세전) | DB · DC · IRP | 경과기간 | 적용금리/적용률 |
| | | 3개월미만 | 0.10% |
| | | 6개월미만 | 중도해지 기준금리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 | | 9개월미만 | 중도해지 기준금리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 | | 11개월미만 | 중도해지 기준금리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 | | 11개월이상 | 중도해지 기준금리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 기준금리 :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기본이자율 ※ 농협인터넷뱅킹>금융상품몰>농협은행>공시실>예금>예금금리>거치식>정기예금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 |
| | 디폴트 옵션형 <small>(25년 6월 가입 부터 적용)</small> | 경과기간 | 적용금리 |
| | | 32개월 미만 | 약정금리 x 80% |
| | | 32개월 이상 | 약정금리 x 90%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금리 :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디폴트옵션형) 금리 적용 ■ 경과월수, 계약월수 미적용 ■ 시행일(25년6월)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 | |
|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연%,세전) |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아래 이율 적용 ※ 단, 퇴직연금 수수료 지급,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 취소 등 사유인 경우에는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금리 적용 | | |
| | 경과기간 | 적용금리 ^{주)} | |
| | 3개월미만 | 3개월 만기 금리 | |
| | 3개월 ~ 6개월미만 | 6개월 만기 금리 | |
| | 6개월 ~ 1년미만 | 1년 만기 금리 | |
| | 1년 이상 | 경과기간별 금리 | |
| | 주)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 | |
| 특별중도해지 사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급여이전 포함)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2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3.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 3)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수탁자의 사임 4.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 5.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 6. 가입자 사망 7. 연금지급 8.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단, 개인형IRP에 한함) 9.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 IRP에 한함) 10.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교체인 경우 | | |

2 거래 조건

| | | | |
|------------------------|--|--|--|
| <p>만기처리방법</p> | <p>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예치 제외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재예치 금리 : 재예치일 현재 고시된 금리 적용 ■ 재예치 금액 :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 </p> <p>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상환 제외 :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재예치 됨 </p> | | |
| <p>분할해지</p> | <p>1. 만기해지 포함 3회 이내 가능 (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 가능)</p> <p>2. 인출횟수 산정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경우 ■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을 위한 경우 ■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p> | | |
| <p>계약해지방법</p> | <p>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수탁자가 해지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p> | | |
| <p>제한사항</p> | <p>통장발급, 담보제공, 질권설정 및 양수도 불가</p> | | |
| <p>세제혜택</p> | <p>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p> | | |
| <p>예금자보호 여부</p> | <p>DC/IRP</p> | <p>해당</p>  |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p> |
| | <p>DB</p> | <p>비해당</p>  |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

2 거래 조건

| | |
|----------------|---|
| 위법계약해지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주)}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p>주)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위반(제17조~21조) :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p> |
|----------------|---|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퇴직연금부)

<별지1> 예금성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 구 분 | 내 용 |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 위법계약 해지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p>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 (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 | | | |
| 예금자보호 여부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93 1458 549 1720"> <p>(DC/IRP)</p>  </td> <td data-bbox="549 1458 1463 1720">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p> </td> </tr> <tr> <td data-bbox="293 1720 549 1977"> <p>(DB)</p>  </td> <td data-bbox="549 1720 1463 1977">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td> </tr> </table> | <p>(DC/IRP)</p>  |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p> | <p>(DB)</p>  |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
| <p>(DC/IRP)</p>  |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p> | | | | |
| <p>(DB)</p>  |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 | | | |